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대학 모집 공고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대학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희망하는 대학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I.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모집 공고 주요 내용(요약)

구 분	주요 내용
선정 규모	▲ 전체 10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25년 연차성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 대학·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예정) 대학 우대
신청 자격	① ▲ 2026년 이전 선정되어 '26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6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최근 3년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사업 운영비: 57백만원~286백만원<신청목표 인원 × 286,000원(단가)> ▲ (거점형) 300명~1,000명 ▲ (거점형 외) 200명~800명 * 지원 상한액: 286백만원
접수기한 접수방법	▲ '26.1.30.(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지방청(1차) · 본부(2차) 선정심사 → 우선협상대학 발표(2.20 예정, 변동 가능)
제 출 처	▲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

II.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모집 공고 세부 내용

- **(사업목적)** 미취업 졸업생 발굴체계 구축하고 수요자(청년·지역기업 등)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발굴 졸업생의 사후 관리 강화로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사업방식)** 대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선정규모)** 전체 10개교 내외
 - * '25년 사업 성과평가 후 다음 연도 지원 여부 결정 등에 따라 잔여 예산 범위 내 신규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향)** ▸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 대학·고교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예정) 대학 우대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 수의 2/3 이상인 대학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 최근 3년 내 성과평가 결과 성과저조를 사유로 사업중단 조치를 받은 대학
- **(사업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7.2월
 - * 사업의 성과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기간에 맞춰 지원기간이 연장·조정될 수 있음

□ **(신청인원·지원내용)** 미취업 졸업생·지역청년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인원을 선택하여 신청

○ 사업 운영비: 57백만원~286백만원 <신청목표 인원 × 286,000만원(단가)>

△ (거점형) 300명~1,000명 △ (거점형 외) 200명~700명

* 지원 상한액: 286백만원

□ **신청 시 유의사항**

- 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선정 취소·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취소(예시: 연차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중단) 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불가(지원취소)
- 2개 이상 대학의 공동(컨소시엄) 참여·운영 제한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시 대학이 해당 민간기관에 사업을 일괄하여 재위탁하는 방식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민간전문기관은 다음의 자격을 갖출 것

◆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민간전문기관 대표자(법인 임원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신청일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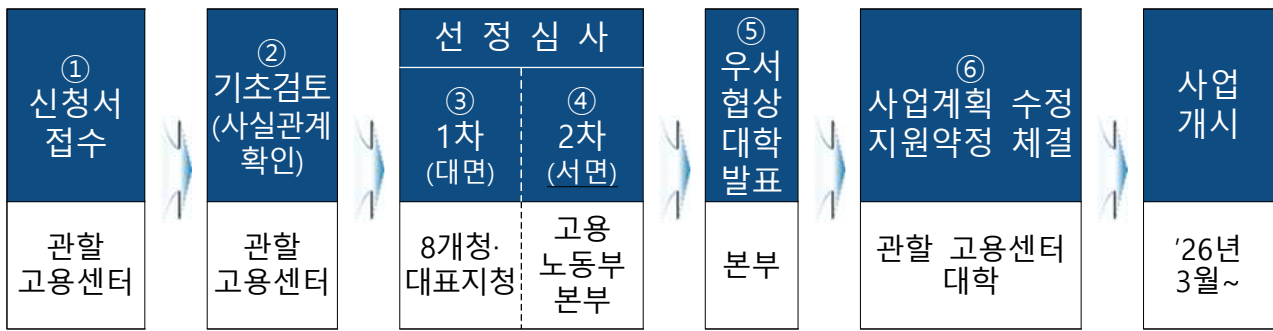
□ **(신청기한·접수)** '26.1.30.(금) 17:00까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에 공문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집 후 **대학별 10부** 제출(파일은 USB 또는 e-mail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시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관련 사업 수행실적 1부 ② 사업계획서 ③ 예산집행계획서
 - ④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⑤ 민간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심사절차·일정)** 기초검토 및 1~2차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학 발표



- 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되, 우편은 1.30.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② 관할 고용센터는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필요시 현장실사)
- ③ 1차 심사: 대면심사 방식(PT 발표는 지양하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인터뷰 실시)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내외 구성(위원장 호선)
- ④ 2차 심사: 1차 심사 추천의견을 바탕으로 서면으로 사업계획 등 종합선정심사*
 - * 1차 심사 최저기준(가점 제외 100점 중 70점) 통과 시에 한함
- ⑤ 우선협상 대학교 발표(2월 20일 예정, 변동 가능)
- ⑥ 우선협상대학과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계획 조정하여 약정 체결
 - ※ 일정 변동 가능

※ 사학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대학은 가급적 심사 시 제외

□ **(문의)**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담당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소병학 사무관 ☎ 044-202-7416)

변지영 주무관 ☎ 044-202-7567)

<붙임1>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선정기준

<붙임2>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예산 활용범위

<붙임3>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목록

<붙임4> 관련 서식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진로·취업 지원체계 · 인프라 구축 (25)	인력 (10)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의 적절성 · 전문인력 확보 및 내부 인력(교수-교직원-전문컨설턴트 대상)의 진로·취업지원 역량강화 계획 등이 우수한가?
	시설 (5)	■ 상담 등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필요 공간 확보 방안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직원의 근무장소, 상담공간 등은 적절하게 구비되었는가? · 공간 활용계획은 각종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기존 사업 성과 (10)	■ 기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5) · '23~25년(3개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 결과 반영 * 3회 우수(5점), 2회 우수(3점), 1회 우수(1점) ■ 유사 정부지원사업(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외) 수행 역량(5) · 진로·취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최근 3년간) · 유사사업 참여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거나 수상경력이 있는가?
서비스 제공 계획 (65)	미취업자 발굴체계 (15점)	■ 미취업 졸업생 발굴 체계 · 졸업생(마지막 학기 예정자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및 미취업 졸업생 DB구축 등이 적절하게 구성·관리되고 있는가? · 미취업 졸업생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지원 체계 적절성 · 졸업생 취업을 대비 서비스 제공 목표 인원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 미취업 졸업생의 1:1 상담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 역량·의지, 전공 등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35점)	■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지원 여부 · 졸업생이 스스로 기획하여 요청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1:1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할 수 있는가? · 졸업생의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상담, 역량 진단 등 실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메뉴판」 제공받을 수 있는가? ■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미취업 졸업생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고 있는가?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 재학 중 서비스 참여 경험, 희망 프로그램(상담 포함)·취업역량 인식(취업 준비도 등)을 조사하되, 전공·희망직무를 구분하여 조사 ■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여부 ·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가? * 동문 네트워크가 부족한 대학은 민간취업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기업 평가 정보, 취업컨설팅 등 현직자 멘토링 지원 계획 반영 여부 · 전공·희망직무별 동문 현직자 선배와의 커뮤니티 구축 계획은 및 운영 방안은 적절한가?
	사후관리 강화 (10점)	■ 서비스 참여주의 사후 관리 방안 및 취업 이후 경력초기 적응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전담 컨설턴트 지정여부 및 사후 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 취업 이후 지속적 정보제공 및 경력초기 적응지원 등 계획은 적절한가?
	외부기관과의 협업 (5점)	■ 고용센터, 자치단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기업단체 등과의 협업·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지역 내 주요 청년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연계, 지역기업으로의 취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 가능성 여부 * 고용복지+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미래내일 일경험 운영기관, 직업훈련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 구직기간 장기화(예: 졸업 2년 이상, 서비스 제공 1년 이상) 시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 방안의 구체적 계획·운영이 적정성 여부
서비스 확산 의지 (10)	홍보 (10)	■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계획 · 보다 많은 지역 청년, 미취업 졸업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효과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붙임2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예산 활용범위

□ 사업비 세부내역

구분		예산 세부내역
기본위탁비	인건비	배정예산 중 100분의 90
	프로그램비	
운영경비		배정예산 중 100분의 10

□ 세부 활용 가능 내역(예시)

구 분		세부 활용가능 내역(예시)
기본 위탁비	인건비	○ 전문 컨설턴트 및 행정전담인력 인건비(법정 수당 등 포함)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청년 진로·직업 상담 인력 채용 * 직업상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기업에서 인사·노무 등 HRD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자 등 활용 가능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관련 행정 지원·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 ※ 전문 컨설턴트 및 행정 전담·보조인력 등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업무수행 인력*에 한하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로 지출 불가 * ①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인력 ②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업무를 포함하여 청년취업지원 업무(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 ③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과 대학 내 기타 업무(청년취업지원 외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은 포함하지 않음
	프로그램비	○ 프로그램 운영비 -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및 졸업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미취업 졸업생 자체 발굴 소요비용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비 지출 불가 *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강사 및 멘토 섭외, 장소 대관, 교보재 구입 등 지출 가능(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빌드업 예산 지출 준용)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교재비, 운영실비 등 - 개별 프로그램의 민간전문기관 위탁 비용 집행 가능 * 단, 프로그램 등 사업은 가급적 대학 직접 운영 권장 -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비

구 분	세부 활용가능 내역(예시)
	○ 컨설턴트 등 역량강화 교육 -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대학 간 네트워크 활동비 ○ 사업 · 프로그램 홍보비 - 사업 소개 및 프로그램 정보가 포함된 현수막·포스터·리플렛·책자, 홈페이지 구축·개선 등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 - 취업캠프, 기업 및 직무설명회, 채용박람회, 각종 경진대회 운영비 - 비대면(SMS, 알림톡 등) 홍보비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성과 개선 및 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운영비	○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비용 등(운영경비, 소모품비 등) - 사무용품 구입, 출장비, 위원수당 지급, 기타 운영경비 등 - 업무추진비는 운영경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컨소시엄기관 운영·관리비

붙임3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74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민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122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교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승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재능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괄호안의 대학은 2026년 통합예정대학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 신청서

기 관 현 황	대 학 명				
	대학 주소				
	대표자(총장)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졸업생 수	2024		
			2025		
	담 당 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	E-mail	
학 제	☐ 일반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컨소시엄 기관명	※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작성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여부() ☐ 거점형 ☐ 일반형 ※ '25년이 아닌 '26년 운영대학을 말함(○·× 표기) □안에 V표기 ② '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참여 예정 대학 () ※ '25년 이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26년도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모집 공고에 참여할 예정인 대학을 말함				
신 청 사 항	사업 운영 규모	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여부() ☐ 거점형 ☐ 일반형 신청인원: 명			

_____대학교는 2026년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대학 선정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며,
위와 같이 사업 운영대학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_____대학교 총장 _____ (인)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 귀하

관련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연도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비 규모	사업내용 및 실적
2023				
2024				
2025				

* 발주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위탁 기관 또는 부처명 기재

** 사업비 규모 : 위탁받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비 규모를 기재(단위: 천원)

*** 사업내용 및 실적 : 실시인원을 포함하여 계량 지표로 기재

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작성

1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_____명

○ 종사자 중 전문 취업컨설턴트 현황

성명	직위	자격 및 경력사항(취업지원 유관분야)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초 정보사항 기재하여 별도 제출

2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3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등 첨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요약본)

※ 사업계획서 요약본은 최대 2페이지

항목		내용
진로·취업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	인력	(맑은고딕, 글자크기 10, 줄간격 120, 장평 90, 자간 -5, 문단위 4, 문단아래 0)
	시설	
	기존 사업 성과	
서비스 제공 계획	미취업자 발굴체계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사후관리 강화	
	외부기관 과의 협업	
서비스 확산 의지		
기타(가점 등 필요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목차)

- ※ 공고문·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26.3월 부터 '27.2월까지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목차 항목별 세부사항은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목차 항목을 준수하되 추가적인 목차는 작성 가능
- ※ 분량은 가급적 최대 30페이지(요약본 및 별지 포함), 별지작성 및 서식 변경 가능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조직도 등)은 작성하지 않으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로 제출

1 진로·취업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25)

1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활용(10)

- ※ 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 등의 활용 방안,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계획, 직원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직원의 상담·전산활용 역량 강화 방안 등 기재

1-2 운영 시설 및 공간 구축 계획(5)

- ※ 사업 수행을 위한 근무 장소, 상담 시설 등 공간, 보유·활용 장비 등의 사항을 기재

○ 상담 등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필요 공간 확보 방안(5)

1-3 기존 사업 성과(10)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성과(5)

○ 유사 정부 지원사업 수행 역량(5)

- ※ 기존·유사 취업지원 사업 역량을 통해 향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제시

2 서비스 제공 계획(65)

2-1 미취업자 발굴체계(15)

2-2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계획(35)

2-3 사후관리 강화 계획(10)

2-4 외부기관과의 협업 계획(5)

3 서비스 확산 의지(10)

○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계획

4 연간 추진 일정

※ 프로그램의 추진 일정을 가급적 월별 추진계획으로 작성하나, 분기별 작성 가능

예 산 집 행 계 획 서

① 총사업비:

②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항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총 계				
기본 위탁비	인건비	소계		
	프로 그램비	소계		
운영경비		소계		